

『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, 주차료 면제 혜택 대상을 확대 시행하며,
-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자연휴양림 입장제한 및 행위제한 규정이 상위법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가 미비함에 따라 위 조항이 포함된 조례를 일제 정비하여 보편적 산림복지정책을 실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상위법인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(안 제1조, 제4조, 제6조)
- 입장제한 삭제(안 제9조)
- 행위제한 삭제(안 제11조)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의5
-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9조의7

○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○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

- 주차료 면제 혜택 확대와 상위법령에 미규정된 입장제한 및 행위제한 조항을 개정 반영하고, 기타 인용조문 정비를 위해 제출된 것으로,
-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, 주차료 면제 혜택 대상을 확대 적용시키며,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시설 이용자에게 불편·부담을 주는 입장 제한 및 행위제한 조항을 정비하여 보편적 산림복지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됨.